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 분야 지역인재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19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3. 8. 23.
3. 회부연월일 : 2023.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 의대·치대·한의대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함과 함께 의료인력의 지방정주를 유도하여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그러나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엄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의약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동법 제15조제2항(의료계열 지역인재선발제도)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취업현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의료 분야 지역인재에 관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의료 분야 지역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취업현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현행	개정안
	<u>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¹⁾은 의약계열에서의 지역인재선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2022학년도까지는 권고사항이었으나, 2023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음.²⁾

1)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2) 참고자료 “2022년 교육부 지역인재 선발 실태조사” 참고

이러한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제도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 지역정주를 유도함으로써 지방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입법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는 지역별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에 대한 통계가 있고, 교육부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지역인재 선발 비율에 대한 통계가 있으나,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여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중복조사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기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조사나 연구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³⁾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개정안의 실태조사와 내용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있고, 조사주기도 개정안의 5년 주기보다 짧은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바, 해당 조사에서 지역인재 선발제도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취업현황을 추가로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동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실태조사(3년주기)를 통해 의료인력의 지역별 활동 현황을 조사 중이고, 동 실태조사 항목에 의료분야 지역인재를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 조사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입법경제상으로도 타당할 것이라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국가승인통계로 이미 지정된 보건의료실태조사 항목에 졸업 후 근무지 현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자료 1 : 2022년 교육부 지역인재 선발 실태조사

○ 의학계열 학과(의예과·치예과·한예과) 지역인재 전체 선발 현황

(단위 : 명, %)

권역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지역인재 입학인원 (A)	전체 입학인원 (B)	지역인재 비율 (A/B)	지역인재 입학인원 (A)	전체 입학인원 (B)	지역인재 비율 (A/B)	지역인재 입학인원 (A)	전체 입학인원 (B)	지역인재 비율 (A/B)
강원권	37	343	10.8	52	383	13.6	66	393	16.8
대구·경북권	284	642	44.2	256	611	43.4	258	621	41.5
부산·울산·경남권	243	546	44.5	228	531	42.9	278	519	53.6
제주권	13	40	32.5	12	41	29.3	13	42	31
충청권	176	490	35.9	165	487	33.9	186	485	38.4
호남권	405	861	47.0	438	873	50.2	433	870	49.8
합 계	1,158	2,922	39.60	1,160	2,926	39.6	1,234	2,930	42.1

※ 제주대 '20학년도, 강원대 '21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예과로 전환

○ 약학계열 학과 지역인재 전체 선발 현황

(단위 : 명, %)

권역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지역인재 입학인원 (A)	전체 입학인원 (B)	지역인재 비율 (A/B)	지역인재 입학인원 (A)	전체 입학인원 (B)	지역인재 비율 (A/B)	지역인재 입학인원 (A)	전체 입학인원 (B)	지역인재 비율 (A/B)
강원권	10	53	18.9	10	52	18.9	18	54	33.3%
대구·경북권	108	194	55.7	107	195	54.9	106	209	50.7%
부산·울산·경남권	130	191	68.1	122	193	63.2	115	194	59.3%
제주권	10	33	30.3	108	33	30.3	11	33	33.3%
충청권	46	145	31.7	52	150	34.7	56	153	36.6%
호남권	151	429	35.2	147	427	34.4	205	438	46.8%
합 계	455	1,045	43.5	448	1,051	42.6	511	1,081	47.3%

※ 제주대, 전북대 '20학년도 약학과 신설, 2020년~2021(편입학 기준), 2022년(신입학 기준)

* 2021년까지는 2+4학년제로 운영하여 편입학으로만 학생 선발

○ 간호계열 학과 지역인재 전체 선발 현황

(단위 : 명, %)

권역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지역인재 입학인원 (A)	전체 입학인원 (B)	지역인재 비율 (A/B)	지역인재 입학인원 (A)	전체 입학인원 (B)	지역인재 비율 (A/B)	지역인재 입학인원 (A)	전체 입학인원 (B)	지역인재 비율 (A/B)
강원권	1,681	479	28.5	516	1,734	29.8	579	1,772	32.7
대구·경북권	4,929	3,176	64.4	3,245	5,207	62.3	3,416	5,364	63.7
부산·울산·경남권	4,518	3,775	83.6	4,077	4,738	86.0	4,144	4,843	86.1
제주권	406	326	80.3	325	412	78.9	353	433	81.5
충청권	3,723	1,419	38.1	1,486	3,899	38.1	1,567	4,054	38.7
호남권	5,050	3,816	75.6	3,918	5,450	71.9	4,395	6,147	71.5
합 계	20,307	12,991	64.0	13,567	21,440	63.3	14,454	22,613	64.0

※ 간호학과는 2018년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학년도부터 지역인재선발